

서울시립대학교 「서울法學」 편집·발간규정

일부개정 2017. 05. 10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에서 발간하는 『서울法學』의 편집·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(2017. 05. 10. 개정).

제2조(발행일자) ① 『서울法學』은 매년 4회 발간한다(2016. 4. 20. 개정).

② 『서울法學』의 발간은 제1호를 5월 31일, 제2호를 8월 31일, 제3호를 11월 30일, 제4호를 그 다음해 2월 말일에 발간하며,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(2016. 4. 20. 개정, 2017. 05. 10. 개정).

제3조(발간방식 등) ① 『서울法學』의 발간은 인쇄물 간행에 의하되, 전자출판(인터넷 홈페이지에의 게시를 포함한다)으로 갈음할 수 있다.

② 『서울法學』에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자는 게재결정 시 전자출판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
③ 『서울法學』에 게재 확정된 논문 필자에게는 『서울法學』 1부와 별쇄본 10부를 무상으로 제공한다(2016. 4. 20. 개정).

제4조(발행재원) 『서울法學』의 편집·발행에 필요한 재원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 발간비와 게재료 및 기타 지원비로 충당한다.

제5조(게재료) ① 『서울法學』에 게재하기로 결정한 논문에 대하여는 소정의 게재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게재료의 금액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.

제6조(학술지 배포) 간행된 『서울法學』은 교류기관에 무상으로 배포한다.

제7조(기타) 『서울法學』의 편집·발간과 관련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학연구소 편집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(2009. 09. 01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1. 12. 01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6. 4. 20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7. 05. 10.)

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